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957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김준기

피 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3.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22. 5. 3. 접수 제26531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조정현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38,801,000원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 소외 C은 강제집행 면탈을 위하여 별지 기재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자신의 아버지 D'이 피고에 대하여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피고(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D과 C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람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19. 소외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F(이하 '소외 회사파산관재인'이라 합니다)과 소외 D, G(이하 '소외인들'이라 합니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25327호 약속어음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나. 소외 C은 위 소외인들의 자녀로서 2021. 1. 27.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고(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에 원고

는 2021. 9. 29. 광주지방법원에 피고 C 을 피고로, 청구원인을 '명의신탁계약 무효에 따른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으로 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0488)을 제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 540488호 나의사건검색).

소의 D 은 위 소송 도중인 2021. 12.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은 자신이 딸 C 명의로 구입한 것이 맞다' 며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고, 동시에 '돈을 갚을테니 소를 취하하시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 고 요청하였습니다. 위 소의 D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H 보증보험으로부터 1억 보증을 받아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하여 돈을 갚겠다' 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므로, 원고는 2021. 12. 21. D 을 말을 믿고 소의 C 에 대한 위 C 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소의 C 은 2022. 5. 3.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아버지 D 이 피고에 대하여 대출을 받음' 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원고는 이후 위 다항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 6. 9. 소의 C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것이고, 부동산 매수시 소의 D 이 매매대금(D 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준 것이므로, C 이 D 에 게 지급할 부당이득금 중 38,801,0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

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공주지방법원 2022가단523459호
나의사건검색).

원고는 2022. 9. 28. 승소판결을 받고 이후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즉, 원
고는 소의 C에 대하여 38,801,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소의 C과 피고의 사해행위

가. 피보전채권

위 라항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소의 C에 대하여 38,801,000원의 채권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의 C과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고자, 본
건 금전차용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가장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위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자이며,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공모하여 가
장 금전차용계약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금전차용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시기, 방법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까.

다. 소외 C 및 피고의 사해 의사 및 악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관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채권자가 이미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한 바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들이 만족을 얻는 물적 기초가 되는 책임재산이 새로이 감소된다. 따라서 비록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는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배당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여전히 다른 책임재산을 공취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원래 위 가압류채권을 포함한 일반채권들의 만족을 담보하는 책임재산 전체를 놓고 보면 위와 같은 물상보증으로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역시 가압류채권자도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가압류채권자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물상보증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외 C의 손해의사는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무자인 소외 C의 이 사건 급전차용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넉넉히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라. 소 결 어

위에서 보았듯이, 소외 C과 피고 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그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의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12.42㎡

2층 153.92㎡

3층 153.92㎡

4층 153.92㎡

5층 153.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표시 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70.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 안산시 상록구 대 260.6㎡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60.6분의 32.575 -끝-

